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			
1. “우정건축물”이라 함은 대국민 우정서비스 향상 및 우정사업의 영업기반 확충, 국민의 우체국 이용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건축물을 말한다.	1. “우정건축물”이란 ----- ----- ----- ----- ----- -----.			
2. “설계공모”라 함은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 ·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설계공모”란 ----- ----- ----- ----- ----- -----.			
3.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3. “일반 설계공모”란 공모안 ----- ----- ----- ----- ----- -----.			
4.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	4. “2단계 설계공모”란 ----- ----- ----- ----- ----- -----			

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5. “제안 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발주기관”이라 함은 건축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조달센터를 포함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을 말한다.

<신 설>

7. “관리부서”라 함은 조달센터 내 기술자문위원 명부를 관리하고 심사위원을 선정, 심사과정 등에 입회하는 “조달계획과”를 말한다.

8. “계약부서”라 함은 조달센터 내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각종 기술용역에 관한 계약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

5. “제안 공모”란 -----

-----.

<삭 제>

6. “간이공모”란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7. “관리부서”란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이하 “사무분장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명부를 관리하고 심사위원을 선정, 심사과정 등에 입회하는 부서를 -----.

8. “계약부서”란 -----
‘사무분장규정’에 -----
-----.

부서를 말한다.

9. “사업부서”라 함은 설계공모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축기획 및 설계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응모신청 및 등록을 하고 제출기한 안에 설계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 포함)를 말한다.

11.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가하는 설계자가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2. “예정공사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으로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 설>

9. “사업부서”란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

10. “설계공모 참가자”란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하고 -----

11. “공모안”이란 -----

12. “총공사비”란 ----- 공사의 ----- 모든 경비로서 -----

13. “설계비”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사업
부서는 우정건축물의 사업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 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생 략)

라.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

14.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란 설계공
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 중
당선작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5. “설계지침서”란 명칭에 상
관없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설계공모 공고
서류를 말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사업
부서의 장은 -----

-----, 2단계 설
계공모, 제안 공모 및 간이공모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에 -----

<삭 제>

토를 받은 경우에는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설계공모 등 절차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① 사업부서는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이하 "설계공모 지침서"라 한다) 등 발주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공고를 요청한다.

가. 설계용역의 주요내용

나. 예정공사비 및 설계비

다.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라. 공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마. 설계공모의 단계 · 등록절차 및 일정

바. 설계설명회 일시 및 장소

사.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아. 질의응답의 기간 · 절차 및 그 공개방법

제2장 ----- 공고 및 공모안 제출 등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① 사업부서의 장은 -----

----- 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이하 "설계지침서"라 한다) 등 -----

-----.

1. -----

2. 총 공사비 -----

3. -----

4. -----

5. -----

6. -----

7. -----

8. -----

--

<u>자.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u> <u>차. 공모안 심사위원 및 심사 방법</u> <u>카. [별표 제1호]에 의한 설계 공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u> <u>타.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u> <u>파. 공모안의 전시 및 반환요령</u> <u>하.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신 설></u> <u><신 설></u> ② <u>사업부서는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후 설계공모 정보를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하여야 한다.</u> <u>제6조(응모신청 등록 등) ①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고한 절차에 따</u>	<u>9. -----</u> <u>10. 심사위원 -----</u> ----- <u>11. 평가 주안점(투표제) 또는 설계공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채점제) 등</u> <u>12. -----</u> ----- <u>13. -----</u> <u><삭 제></u> <u>14. 실격기준 및 설계지침서 미준수에 대한 조치사항 등</u> <u>15. 그 밖에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u>사업부서의 장은 -----</u> ----- ----- -----. <u>제10조(참가등록)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부서</u>
--	---

라 응모신청 및 등록하여야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별지 4-3호]의 청렴서약서를 응모신청 및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공모 지침서) ① 사업 부서는 설계공모 지침서에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40조에 따른다.

가. 사업의 목적 및 일정

나. 설계의 기본 방향

다.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의 장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
-----.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지침서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교부비용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로 하여금 [별지 4의3]의 청렴서약서를 참가등록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지침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지침서에 -----

----- 제49조
-----.

1. -----

2. -----

3. -----

라. 관련 법규 적용기준

마.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바. 주요 실별 면적

사.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 설계지침

아.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자. 필요 시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항

②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정해서 설계공모 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도서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종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공모 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

4. -----

5. -----

6. --- 시설별 ---

7. -----

8. -----

9. -----

②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실격기준

2. 투표제의 경우 평가의 주관점

3. 채점제의 경우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및 감점기준

<삭 제>

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 할 수 있으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공모 지침서 등에 명시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설계설명회) ① <신 설>

① 사업부서는 설계설명회를 통

제7조(설계지침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 ①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지침서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항목과 범위, 그리고 미준수 사항(관계 법령 및 규정 위반 포함)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공모안 작성 요건 위반 등의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관계 법령 및 규정 위반 포함)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설명회) ①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설계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

해 질의서 작성방법, 응답서 공지에 관한 사항 및 설계공모 참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감점 항목 및 실격항목 등) 등을 안내한다.

② 설계설명회 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배포되는 모든 자료는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공고문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간주한다.

<신 설>

제9조(질의응답) ① 제6조에 따라 응모신청 및 등록한 자는 해당 설계공모 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부서에 [별지 9호] 서식으로 서면 질의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는 응답내용을 모든 응모신청 및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할 경우 응답내용에

----- 사
항 등을 -----.

③ -----
----- 설계
지침서 및 -----
본다.

제8조(심사 일정 공개)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
함) 명단, 심사장소 및 심사일정
등을 확정하여 설계공모 공고서
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질의응답) ① 제10조에 따
라 참가등록한 자는 해당 설계지
침서의 -----
--[별지 9] -----
-----.

② 사업부서의 장은 -----
참가등록자에게 -----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이 응모신청 등록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③ 응답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공고된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 설>

<신 설>

<신 설>

-----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다.

③ 응답내용은 설계지침서 및 공고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본다.

제9조(제출도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할 도서의 종류와 규격을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작성·제출하는 제출도서에 조감도, 모형, 3차원 이미지, 설계도면(2단계 공모의 1차 공모 및 제안공모 시에 해당),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징성, 예술성, 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계지침서에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정하여 조감도,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 사진, 3차원 이미지 또는 3차원 시물레이

<신 설>

<신 설>

제10조(공모안의 제출) ① 설계공
모 참가자는 제5조에 의하여 공
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 등 필
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② 제출되는 공모안은 익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별표 제2호]에 따른 실
격 및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③ 조달센터는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
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
다.

선(BIM)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출도서의
최소화를 위해 발주 규모 또는
공모 유형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제출도서 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제출도서가
제2항 및 제3항의 허용범위를 위
반한 경우 설계지침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공모안을 처
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모안의 제출) ① -----
----- 제5조제1항에 ----
----- 공고서에서
요구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설계지침
서 등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익
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모
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심사계획 수립) ① 사업부서는 심사위원 구성, 공모안 검토기간, 심사장소, 심사일정 등을 확정하여 심사대상자에게 공지한다.

② 심사위원 구성은 배점기준, 사업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다만, 분야별 위원수는 해당 심사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공모안 검토 등) ① 사업부서는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출된 공모안과 설계공모 지침서 및 관련 안내문 등을 심사개최 최소 5일 전에 심사위원회에 배포한다.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교부기간을 단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사업부서로부터 공모안을 수령한 경우 함께 배포한 [별지 4-1호], [별지 4-2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 위

<삭 제>

<삭 제>

촉동의 및 보안각서를 수령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직접,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사업부서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공모안을 성실하
게 사전 검토하여 심사에 참석
하여야 한다.

제13조(감점) ① 사업부서는 설계
공모 지침서에서 제시한 [별표
제2호]의 실격 및 감점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공모안에 대
한 실격 및 감점사항을 검토하
여 [별지 1호]의 서식으로 작성
한 후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받아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다
만, 설계공모 참가자가 감점사
항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심사위원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② 감점을 결정함에 있어 명백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삭 제>

<삭 제>

정할 수 있고, 심사절차가 종료
한 이후 감점사항이 발견된 경
우에는 감점을 적용하여 재심사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실격) 사업부서는 공모안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실격사유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할 경
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
쳐 심사에 포함할 경우 해당 설
계공모 지침서 등에서 명기한 감
점을 부여한다.

가. 실격사유로 명시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
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
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
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제14조(실격) ① 사업부서의 장은

----- 이 경우 설계
지침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
-----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
(條文)을 위반한 경우

<삭 제>

2. -----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만.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물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바.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사. 제13조제1항의 감점기준에 저촉된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3. -----

4. -----

5. -----

6. 제7조의 설계지침 미준수
(제39조제1항의 감점사유 포함)에 해당하는 -----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아.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자.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
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등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
구나 이미지를 표기한 경우

차. 그 밖에 사업부서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실격사
항

<신 설>

제15조(사전접촉 금지 등) ① 사
업부서는 심사위원에게 공모안
배포 시 심사과정 중(사전검토
기간 포함)에는 설계공모 참가

7. -----

8. -----
----- 대표자명을 -----

9. -----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
격사유에 해당하는 공모안을 심
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처
리 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부터 제5
호, 제7호, 제8호 등에 해당하고
실격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심
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
다.

제15조(사전접촉 금지 등) ① 사업
부서의 장은 -----
----- 심사과정 중(심
사위원 선정부터 심사완료까

자와의 사전 접촉 금지, 설계공모 참가자 또는 심사위원의 알선·청탁 등 불공정 행위 및 신고절차,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등을 안내한다.

② 설계공모 참가자(대표자 및 소속직원 포함한 모든 참가자) 심사대상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 등이 있을 때에는 [별지 2호]의 서식으로 사업부서장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설계공모 참가자인 경우 대표자가 신고 주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불공정 행위 등에 가담하지 않고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가. 심사위원이 설계공모 참가자로부터 금품, 물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지)에는 심사대상자와의 사전 접촉 금지, 심사대상자의 -----

-----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 ----- 행위
----- 가 -----[별지 2]의 -----
----- 사업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 물품, 향응 등의 행위를 요구한 경우

<삭 제>

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게 사전 접촉을 요구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물품·향응 요구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마. 제14조‘라’호 또는‘마’호인 경우

<신 설>

③ 사업부서는 심사위원 또는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신고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가. 해당 심사위원은 해당 설계공모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며 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나. 제14조에 따라 해당 설계

<삭 제>

<삭 제>

<삭 제>

2. 심사대상자가 심사위원회에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③ 사업부서의 장은 사전접촉 금지 위반,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단서 삭제>

1. -----

----- 조치하여야 한다.
2. -----

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해당 설계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u>조치한다</u>. <u>제16조(심사절차의 종료)</u> 심사절차는 입상작을 선정한 후 이를 <u>사업부서장이</u>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종료된다. <u><신 설></u> <u>제17조(심사위원의 임무)</u> 심사위원은 다음 <u>각호의</u> 임무를 수행한다. <u><신 설></u> 1. 공모안에 대한 토론 및 심사·평가 2. 심사 시 해당 분야 평가점수	----- ----- ----- ----- ----- <u>조치하여야 한다</u>. <u>제65조(심사절차의 종료)</u> ----- ----- <u>사업부서의 장이</u> ----- -----. <u>제16조(재공모 등) 공모안 접수 결과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 또는 당선작(또는 계약상대자)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으로 발주할 수 있다.</u> <u>제17조(심사위원의 임무)</u> ----- ----- <u>각 호의</u> ----- --- 1. <u>설계지침서, 질의응답서 등 관련 자료 검토</u> 2. <u>공모안에 대한 적정성 등 사전검토</u> 3. 공모안에 대한 토론 및 심사·평가 4. 심사 시 해당 분야 평가점수
---	---

표 및 평가사유서 등 작성 제출

3. 당선작에 대한 자문의견 작성 제출 등

<신 설>

제18조(심사위원의 자격) ① 심사위원은 기술자문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전문분야별 등록된 후보자 위원 중에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우정건축물 건립 포함)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심사위원 외에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거나 설계공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을 추가로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표 및 평가사유서 등 작성 제출

5. -----

6. 그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제18조(심사위원의 자격) ① -----
----- 제7조에 -----

-----.

1. -----
-----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

2. -----

② 사업부서의 장은 -----

-----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

-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제19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사업부서는 공모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심사대상 사업의 규모 및 종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 소속 직원이 제18조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추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신설>

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
-----.

제19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 건마다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추천자 중에서 위촉한 5~9인의 ----- 우정사업본부 소속 -----

-----.

③ ----- 우정사업본부 소속 -----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설계공모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사업부서는 심사위원회 의결
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
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① (생 략)

② 외부 심사위원은 기술자문 운
영지침에 따라 위촉한 기술자문
위원 명부 중에서 선정하고, 내
부 심사위원은 사업부서에서 사
전 구성한 명부(우정사업본부 및
조달센터, 지방우정청 등 우정사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위원
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운영위원회는 법 제22조의3에 따
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방식

2. 설계공모 일정

3. 설계공모 지침(안)

4. 심사위원, 심사방식 등 심사
위원회 운영

5. 그 밖에 설계공모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

⑦ 사업부서의 장은 -----

-----.

제20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업본부 소속기관 중에서 제18조 제1항‘가’의 자격을 갖춘 직원)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에서는 설계용역 발주 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설계 공모 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관리부서에서는 심사위원 명단이 선정되면 심사위원 선정에 입회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제21조에 따른 평가 위원의 제척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제척위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심사위원을 선정한 후 즉시 사업부서로 통보한다.

⑧ 선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에 공개하고 이와 함께 건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에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의 규모·종류·

----- 제18조
제1항제1호의 -----

-.

<삭 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삭 제>

⑥ 선정된 심사위원 명단(예비심사위원 포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 공개일 정 및 방법은 시행공고 또는 설 계공모 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조 정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설계공모안 심사에서 제척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 사업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 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 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 한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 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 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

설계지침서 등에 -----

-----.

⑦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 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제21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

----- 제척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공동 참여를 포함한다), 또는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3-1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별지 3-2호] 서식으로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위원을 당해 심사에서 배제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u>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u><신 설></u>	<u>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u><신 설></u>	<u>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u>
<u><신 설></u>	<u>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u><신 설></u>	<u>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발주기관등은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u>

<신 설>	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장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④ 심사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하고,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소집 및 개최) ① 사업부서는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심사대상 사업명, 심사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심사개최 통지서를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2/3 출석으로 개최한다.	⑥ 사업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결원에 대비하여 30%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을 모든 심사과정에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사업부서의 장은 ----- ----- ----- ----- -----. ② ----- -- 과반수 -----.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전반을 주관하며 참석한 외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심사에 참여한다.

④ 간사는 사업부서장으로 하며, 위원회 회의를 정리하며 위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3조(심사방법 등) ① 사업부서
는 심사 전 과정에 대해 조달센터 관리부서의 감사담당을 심사위원회에 입회하게 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다.

<신 설>

② 사업부서는 심사 시 심사대상자 등에게 공모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 또는 질의응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발표자는 심사대상 업체 소속
책임건축사로서 시행공고일 기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

-----.

<삭 제>

제24조(심사방법 등) ① 사업부서
의 장은 -----

 -----.

②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해야 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

. 다만, 설
명 또는 질의응답에 응할 시 비
대면 온라인 방식 활용이 가능하
다.

④ _____ 임·직
_____ 워으로서

준 6개월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재직 확인은 경력증명서(대한건축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 발급분에 한함) 제출로 갈음한다. 다만,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설립한 지 6개월 미만의 심사대상자는 발표자인 소속 책임건축사의 재직 여부(시행공고일 기준)만 확인하고 재직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 설>

<신 설>

임·직원의

⑤ 발표시간은 20분 이하로 하
되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심사위원 사전검토) ① 사업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모안의 교부기간을 단축하거나 심사위원회 당일 공모안을 교부할 수 있다.

1. 공모안
2. 설계지침서

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체 보상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
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
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
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제26조(심사결과 발표 및 공개)

① 평가결과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평가결과를

----- 금액으로 -----

--.

가. 기타 입상작이 4개인 ---
: ----- 순위가 높은 순
으로 보상금의 -----

--

나. 기타 입상작이 3개인 ---
: ----- 순위가 높은 순
으로 보상금의 -----
--

다. 기타 입상작이 2개인 ---
: ----- 순위가 높은 순
으로 보상금의 -----

라. 기타 입상작이 1개인 ---
: 보상금의 -----

제60조(심사결과 발표 및 공개)

① 심사결과는 -----
-----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발

발표한다.

② 입상작의 최종 평가점수는
심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
를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
등을 통해서 심사위원 실명과
함께 공개하고,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안의 심사결과는 익명
으로 평가점수만 공개한다. 다
만, 필요에 따라 공개범위에 대
하여는 해당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심사대상자는 제2항 평가결
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표한다.

② ----- 심사결과는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

- 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인
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를
병행할 수 있다.

1. 참석 심사위원 및 입상자 명
단

2. 심사위원별 투표결과 또는
평가점수(투표결과 또는 평가
점수를 집계한 총괄표를 포함
한다.)

3.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4. 입상작의 이미지

5.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공
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③ ----- 심사결
과에 -----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8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심사위원 해촉) 사업부서
는 평가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공모안에 유·불리하게 평가
하여 문제를 야기한 위원 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정
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심사를
회피한 자는 조달센터 기술자문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 [별지 8]의 -----
----- 사업부서의 장에
게 -----.

제25조(청렴서약서 등) 사업부서의
장은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으
로부터 각각 [별지 4의1], [별지 4의
2]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 위촉동
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로부터는 [별지 4
의3]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
다.

<삭 제>

제4장 공모안 심사방법

제1절 일반사항

제26조(공모안 심사원칙) ① 심사
위원의 공모안 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
공의 발전과 공간문화의 창달에

<u><신 설></u>	<u>이바지하여야 한다.</u> <u>② 사업부서의 장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공모안의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u>
<u>제28조(저작권) (생 략)</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제29조(공모안의 전시 및 반환)</u> ① <u>사업부서는</u> 심사결과를 발표	<u>제62조(저작권) (현행 제28조와 같 음)</u> <u>제27조(공모안 심사방식) ① 설계 공모 참가자들이 제출한 공모안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부서의 장이 사업 특성, 공모방법 및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채점제를 적용할 수 있다.</u> <u>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모안 심사방식을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u> <u>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거나,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심사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심사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u> <u>제63조(공모안의 전시 및 반환)</u> ① <u>사업부서의 장은</u> -----

한 후 일정기간 입상작을 전시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작품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내용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심사 대상자에게 반환한다.(단,
당선작의 모형과 설계도서는 조
달센터에서 보관하고, 우수작
가작은 원본 설계도서(CD 포
함)와 사본 각 1부씩 조달센터
에서 보관한다)

④ 작품 전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일
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
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아니한 공모안은 사업
부서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
다.

<신 설>

----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대로 일정기간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반환하여야 한
다.

<단서 삭제>

④ -----

----- 사업부서
의 장이 -----.

제28조(심사위원 심사의견) 심사위
원은 심사위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각 공모안을 심사한 후 개
별 공모안의 우수한 점과 개선사
항 등 심사의견을 [별지 6]평가
사유서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신 설>

<신 설>

제32조(제출도서 등)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
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
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 사업의 규모·종류·특성 등
을 고려하여 모형,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고려사항) ① 심사위원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주안점을 고려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이 제7조제3항의 설
계지침 미준수 공모안을 당선작
으로 투표하는 경우 [별지 11] 선
정사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야 한다.

<삭 제>

제31조(투표방법)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차수)별
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다만 공모 참가자가 7인 이하인
경우 1차 투표를 생략하고, 공모
참가자가 2인인 경우 1차 투표와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3조(평가)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별표 제7호] 하고 평가항목별로 설계 공모 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만, 해당 공모안의 규모·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최종 평가점수는 설계공모 참가자별로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씩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2차 투표를 생략한다.

② 심사위원의 단계별 투표 공모안은 각 단계별로 선정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1차 투표: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2. 2차 투표: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3.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삭 제>

<삭 제>

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와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④ 심사위원은 채점표[별지 5호] 서식, 평가사유서 [별지 6호] 서식, 자문의견서[별지 7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⑤ 사업부서는 입상작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 공모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방법을 결정하여 재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이때 평가사유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⑥ 해당 심사대상 사업의 규모 및 종류, 특성, 심사 대상 공모안의 수에 따라 예비심사와 본심사 2단계로 구분하는 등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제32조(토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각 단계별 투표 전 혹은 동일 득표자가 나온 경우 투표기준에 대하여 심사위원간 토론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설계공모 공고 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한다.

<신설>

제35조(일정) ①, ② (생략)

<신설>

제43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
-- 명기하여야 한다.

제33조(동일 득표자 처리) 사업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44조(일정) ①,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심사위원 제출서류) 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1. <u>[별지 6] 평가사유서: 전체 공모 참가자에 대한 평가</u> 2. <u>[별지 7] 자문의견서</u> 3. <u>[별지 10] 투표용지</u> 4. <u>[별지 11] 선정사유서: 당선작으로 투표한 사유</u>
<u>제36조(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u> 제출도서의 형식 및 규격 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과 <u>[별표 제3호]</u>의 기준을 참고하여 <u>정한다.</u> <u><신 설></u>	<u>제45조(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u> ----- ----- <u>[별표 3]</u> 의 ----- <u>정하여야 한다.</u> <u>제35조(당선작 및 기타입상자 결정)</u> 심사위원회는 제32조에 따라 실시한 2차 및 3차 투표 결과를 활용하여 제58조의 당선작과 기타입상작(4인 이내)을 결정한다.
<u>제37조(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u> 2차 제출도서는 <u>설계공모 지침서에서 정하는</u> 바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u><신 설></u> <u>제38조(1차 공모의 평가) ① (생</u>	<u>제46조(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u> ----- <u>설계지침서에</u> <u>서 정하는</u> ----- -----. <u>제3절 채점제 심사방식</u> <u>제36조(적용범위)</u> 본 절의 각 조항은 채점제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u>제47조(1차 공모의 평가) ① (현행</u>

략)

② 1차 공모의 평가를 통해 2차 공모에 참여할 5개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한다. -----

-----.

③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 제4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별표 제7호] 하고 평가항목별로 설계공모 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만, 해당 공모안의 규모·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최종 평가점수는 설계공모 참가자별로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씩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

과 같음)

② 사업부서의 장은 1차 -----

5인 ----- 선정하여야 한다. -----

-----.

<삭 제>

<삭 제>

<삭 제>

립)와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⑥ 해당 심사대상 사업의 규모 및 종류, 특성, 심사 대상 공모안의 수에 따라 예비심사와 본심사 2단계로 구분하는 등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⑦ 사업부서는 입상작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 공모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방법을 결정하여 재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이때 평가사유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삭 제>

제37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업부서의 장은 채점제로 공모안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2. [별표 4]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u><신 설></u> <u>제39조</u>(2차 공모의 평가) 2차 공모의 평가는 <u>제33조의</u> 규정을 준용한다. <u><신 설></u> <u><신 설></u> <u>제40조</u>(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	3. <u>[별표 6] 제안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u> <u>제48조</u>(2차 공모의 평가) ----- ----- <u>제4장 공모안 심사방법의</u> -----. <u>제38조</u>(채점방법) ① 심사위원은 <u>[별표 1]의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차등 폭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평가할 경우 10%, 심사위원 1인이 평가할 경우 5%로 하고,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은 [별표 7]을 따른다.</u> ② <u>최종 평가점수는 설계공모 참가자별로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씩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와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하지 않는다.</u> <u>제49조</u>(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
--	--

① 사업부서는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2.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신 설>

4. (생략)

②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설계공모 공고 시 제안공모임을 명기한다.

<신 설>

①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

-----.

<삭 제>

1. 리모델링, 특화설계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공모안의 -----

기술제안 또는 대응능력을 --

<삭 제>

2. 사용자 등 관계자, 다른 공종 전문가, 주민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감점기준)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를 참고하여 다음

	<u>각 호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한 감점기준 및 점수의 범위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1.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기준 쪽수, 기준 면적, 제출도서 작성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u>
<u><신 설></u>	<u>2. 감점사유로 명시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條文)을 위반한 경우</u>
<u><신 설></u>	<u>3.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사위원 사전접촉으로 우정사업조달센터장으로부터 실격 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u>
<u><신 설></u>	<u>4. 설계공모 참가자가 해당 설계공모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u>
<u><신 설></u>	<u>5.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감점 사항</u>

<u><신 설></u>	<u>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설계지침서에서 제시한 감점기준에 따라 해당 공모안을 감점처리한다.</u>
<u><신 설></u>	<u>③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이익으로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1. 설계지침서에 감점항목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u>
<u><신 설></u>	<u>2. 감점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제4항에 따라 감점제외로 결정한 경우</u>
<u><신 설></u>	<u>3. 심사절차의 종료 후에 감점 사항이 발견된 경우</u>
<u><신 설></u>	<u>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감점 또는 감점제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u>
<u>제41조(일정) (생략)</u>	<u>제50조(일정) (현행 제40조와 같음)</u>
<u><신 설></u>	<u>제40조(동점자 처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8조에 따른 입상작</u>

제42조(제공 정보) 설계공모 참가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설계공모 공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1. ~ 8.(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결정을 할 때, 최종 평가결과 동 순위가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의 투표로써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 공모안에 대하여 [별지 11] 선정사유서를 작성·제출한다.

제51조(제공 정보) 계약부서의 장
은 설계공모 -----

-----.

1. ~ 8.(현행과 같음)

제41조(심사위원 제출서류) 각 심사위원은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5] 위원별 채점표

2. [별지 6] 평가사유서

3. [별지 7] 자문의견서

제43조(제안요청 과제) (생략)

제44조(제출도서 등)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 제5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설계공모 지침서에 명시한다.

제45조(평가) ①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 제6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한다. 다만, 평가항목 중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배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청년 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별표 제6호]에 따른 평가분야 중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은 사업부서등이 평가하고, '수행계획 및 방법'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중에서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의 포트폴리오' 평가를 심사위원이 평가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수별 평

제52조(제안요청 과제) (현행 제43호와 같음)

제53조(제출도서 등)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사업의 ----- [별표 5]의 -----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4조(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7조 제3호 [별표 6] 평가분야 중 -----

-----.

② 제1항의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은 사업부서의 장이 평가한다.

<삭 제>

가등급 배분[별표 제7호] 하고
평가항목별로 설계공모 지침서
의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
한다. 다만, 해당 공모안의 규
모·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
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
다.

<신 설>

④ 최종 평가점수는 설계공모
참가자별로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
저·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씩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
림)와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
한다.

⑤ 해당 심사대상 사업의 규모
및 종류, 특성, 심사 대상 공모
안의 수에 따라 예비심사와 본

③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6-1]
평가분야 중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의 검토 결과를 심사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심사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심사 2단계로 구분하는 등 심사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⑥ 사업부서는 입상작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 공모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방법을 결정하여 재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이때 평가사 유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체결 등) ① 사업부서는 설계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당선작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 및 실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기타 입상작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66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체결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부서의 장에게 -----
-----.

②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

----- 평가결과에 따른 차순위의 기타 입상작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③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7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생략)

제48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설계공모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공모 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③ 계약부서의 장은 -----

-- 10일 ----- 체결하여야 한다. ---, 사업의 추진여건에 -----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현행 제47조와 같음)

제68조(기타사항) -----

----- 설계지침서 등에

-----.

제4절 간이공모

제55조(간이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간이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

<u><신 설></u>	<u>모 공고에서 간이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56조(일정)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3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u>
<u><신 설></u>	<u>제57조(제출도서 등) 간이공모의 제출도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체 분량은 A3용지 4매 이내로 한다.</u>
<u><신 설></u>	<u>제61조(결과조치)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사 완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u>